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2006. 4. 28일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의3(지방의회의 의무 등)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의원 윤리강령 준수 의무 규정 및 윤리강령 제정(제2조)
- 나.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준수와 직권남용금지 규정(제3조 내지 제5조)
- 다.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금품 등 취득금지(제6조)
- 라.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사항 준수 및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(제9조)
- 마.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된다.(제10조)
- 바.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.(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4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의견

본 제정 조례안은 2006. 4. 28일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려는 것으로

- 의원으로서 품위유지, 직권남용 금지, 직무관련 금품취득금지, 기밀누설금지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및 규범 그리고, 준수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한 내용임

- 특히 별도 마련된 ‘윤리강령’ 은 지난 제3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로 채택하였으나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제정 제도화 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의원의 품위유지는 물론이고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인격과 식견 함양 등을 직시하고 있어 제5대 의회 출발에 즈음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정신적인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봄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